

전세계 인류의 이름으로

'질병과 병존하는
제약 비즈니스' 및
최근의 이라크 침략 전쟁과
관련하여 자행된 반인류
범죄 및 대량 학살에 대한
고소장

이 고소장은 **Matthias Rath** 박사와
전세계 인류를 대신한 그외 여러
사람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003 년 **6** 월 **14** 일 헤이그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담당 검사

Louis Moreno-Ocampo 귀하

전교: 국제형사재판소

Maanweg 174

NL-2516 AB Den Haag/The Hague

요약

이 고소장은 유사 이래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최악의 범죄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를 이용하여 수백만에 이르는 생명을 노리거나 앗아간 죄, 전쟁 범죄 및 기타 반인류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합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죄로 인해 재판에 회부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인류를 위협하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세계적인 캠페인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ICC 는 이 고소장을 최우선 긴급 사건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자연인과 각국 정부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대열에 동참해야 합니다.

서론

카르텔

이 고소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들은 다음 2 가지 주요 범죄 유형과 관련됩니다.

- 질병과 병존하는 제약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자행된 대량 학살 및 기타 반인류 범죄
- 최근의 이라크 침략 전쟁 및 세계 대전의 조장을 통해 저지른 전쟁 범죄와 침략 행위 그리고 기타 반인류 범죄

이러한 2 가지 유형의 범죄는 다음 요인에 의해 서로 직결되거나 관련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모두 동일한 투자 그룹과 그 정치적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를 입증하고 이들의 공동 동기를 제시하기 위해 제시하기 간략히 역사를 뒤돌아 보기로 합니다.

20 세기를 통틀어 제약 산업은 의도적으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자연 요법을 특허가 인정되며 따라서 막대한 이윤이 보장되는 합성 약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세계의 건강 시스템을 통제하려는 목표를 통해 조직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 산업은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를 소유한 소수의 무자비한 기업가들에 의해 결정된 투자였습니다. 이들은 부를 더욱 축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체를 그들의 시장으로 한정했습니다.

이 투자 산업의 추진 축은 록펠러(Rockefeller) 그룹입니다. 이들은 19 세기에서 20 세기로 넘어오는 전환기에 이미 미국 제약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인 또 다른 투자 그룹은 로스차일드(Rothschild) 금융 그룹을 주축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카르텔과 2 차 세계대전

20 세기 전반기까지 록펠러(Rockefeller)의 Standard Oil(지금의 EXXON) 다음으로 세계 2 번째 규모의 제약/석유화학 그룹은 독일에 본사를 둔 이계 파르벤(IG Farben)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히틀러의 정권 장악과 그 휘하의 유럽 및 세계 정복 야욕에 가장 중요한 단일 동인이었습니다. 실제로 2 차 세계대전은 이계 파르벤(IG Farben)의 기획위원회에서 사전에 계획되어 발발되고 자행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이계 파르벤(IG Farben)은 독일을 제외한 세계 최대의 공업 단지인 이계 아우슈비츠(IG Auschwitz)의 모기업이었습니다. 이 카르텔이 축적한 부는 대부분 아우슈비츠(Auschwitz) 수용소의 사람들을 포함한 노예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희생한 대가입니다. 이계 파르벤(IG Farben)은 유럽과 전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독일의 무자비한 정치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이계 파르벤(IG Farben)과 록펠러(Rockefeller)의 Standard Oil 은 각각 서로의 최대 이해 당사자였습니다. 그 당시 나찌 독일을 굴복시킨 연합군의 승리가 세계 최대의 제약 및 석유화학 그룹으로 만들려는 이계 파르벤(IG Farben)의 계획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Standard Oil 과 록펠러 그룹의 여러

제약/석유화학 기업들은 이 업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그룹이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그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파르벤(I.G. Farben) 카르텔의 경영진을 심판하던 1947년 뉘른베르크(Nuremberg) 전범 재판소에서 이들 경영진의 일부는 대량 학살, 약탈 및 기타 범죄를 포함한 반인류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뉘른베르크(Nuremberg) 전범 재판소는 또한 이게 파르벤(IG Farben) 카르텔을 해체하여 호세(Hoechst), 바이엘(Bayer), 바스프(BASF)로 분리했습니다. 오늘날 이들 회사 각각은 그 당시의 모기업인 이게 파르벤(IG Farben)보다도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세계 최대의 의약품 수출국입니다. 실제로 전세계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2/3가 이 두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제약 비즈니스의 본질

피고인들은 오래 전에 이미 퇴치되었을 심장 혈관 질환, 암 및 기타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생명들의 조기 사망은 우연의 결과도 아니고 태만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약 산업과 그 투자자들의 유일한 목표인 세계 제약 시장을 수조 달러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이었습니다.

제약 산업의 시장은 인체이고 그 투자 수익은 질병의 지속과 확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수익은 이 산업을 세계 최대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산업으로 만들어 주는 의약품의 특허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질병의 예방과 퇴치라는 것은 제약 회사 의약품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거나 완전히 붕괴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제약 업체들은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 제약 회사들은 과학, 의학, 대중 매체, 정치계의 정책 집행자들과 공모자들의 혼란을 이용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제약 업계의 로비스트나 전직 경영진에 의해 조종되거나 심지어는 이들이 직접

운영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이러한 수조 달러 규모의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무고한 수많은 환자와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몰기 위해 각국의 법률이 와해되고 악용되었습니다.

제약 산업이 성공적인 투자 비즈니스로 자리를 잡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안전하고 자연적인 요법으로부터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법은 특허가 인정되지 않고 이윤폭도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 요법은 세포 물질대사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연 건강 요법의 전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전세계 많은 국가의 건강 시스템을 탈취한 결과로 제약 업계는 수백 만의 생명과 전세계 국가 대부분이 그들의 투자 비즈니스에 종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비즈니스로서의 제약 산업

제약 산업은 수백 만의 환자들에게 '건강'을 제의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질병을 그들 미래의 비즈니스가 보장되는 전제 조건으로 조장함과 동시에 이 업계가 제공하는 것은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품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기만을 은폐하기 위해 제약 업계는 미래의 요법을 연구하는 데 투자하는 액수의 2 배를 여기에 퍼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사기 행위가 인류에 대한 '후원자'라는 계획적인 연막에 가려진 이 투자 비즈니스가 약 1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60 억 인류와 전세계 각국의 경제가 이 업계의 무자비한 범죄 행위에 의해 불모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병존하는' 제약 비즈니스에 대한 폭로

지난 10 년 동안 저는 이 세계 최대 투자 산업의 의도적인 사기 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다른 최대 장애물이 질병의 확산에 의해 유지되는 투자 산업인 제약 업계 자체와 그 본질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심장 혈관 질환과 기타 여러 유행병의 참된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료 및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과 함께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자연적이며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대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세포 물질대사를 최적화하는 자연 요소의 규명은 인류가 심장 혈관 질환, 암 등을 포함한 현대의 가장 흔한 질병들을 예방하고 대부분 퇴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국제 위기와 이라크 침략 전쟁의 배경

현재 다음 4 가지 주된 요인이 제약 산업의 생존과 그에 따른 수조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산업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 수많은 제약 업체의 제품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집단 소송을 몰고 올 해결할 수 없는 법적 갈등
2. 시장으로서의 질병을 효과적이고 대폭적으로 퇴치할 자연적이고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획기적인 발견으로 인해 일어나는 해결할 수 없는 과학적 갈등
3.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 갈등. 터무니 없는 특허료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백 만 생명의 조기 사망을 유발한다는 사실 때문에 제약 비즈니스 전체의 신뢰도가 손상됩니다.
4. 해결할 수 없는 업계의 갈등. 제약 비즈니스 모델을 고의적인 사기로 폭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제약 카르텔은 특허 약품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위협적인 건강 대안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이 노력은 유럽 의회에 침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여러 UN 기구를 악용하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계 최대 투자 산업이 계획적인 사기 비즈니스로 폭로되고 이 산업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면서, 직접적이고 세계적인 이 산업의 보호

법률들이 이러한 범죄를 은폐하고 인류의 건강을 상대로 하는 '질병과 병존하는' 투자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통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절박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사기 비즈니스 보호 법률은 평화기에는 시행될 수 없는 강력한 여러 수단과 시민권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과 세계 대전을 유발할 일련의 군사적 충돌인 국제 위기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의 포기가 허용되고, 군정법이 통과되며, 피고인들이 그들의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와 기타 범죄를 합법화하는 세계적인 보호 법률이 시행되도록 하는 세계적인 심리적 상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약 산업은 세계 최대의 정치 군사 권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지 부시 캠프의 단일이자 최대 기업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조지 부시가 당선되면서 록펠러(Rockefeller) 투자 그룹은 백악관, 미국방부에 바로 접근하면서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행정부에도 로스차일드(Rothschild) 그룹에 의해 이와 비슷한 영향력이 행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의 2대 수출국인 미국과 영국이 현재의 국제 위기를 확산시키고 이라크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이 전쟁의 필요성은 '테러'와의 전쟁, 불량 정권 축출, 대량살상무기의 무장 해제라는 가면으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로 수백 만의 생명을 앗아간 동일한 이해 집단과 동일한 정치적 이해 당사자들이 수만 명의 무고한 이라크 국민들과 미국, 영국 등 참전국의 젊은 군인들을 불필요하게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라크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자행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들은 현재 점령 이라크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예적 흑사, 약탈 및 기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 집단과 그 정치적 이해 당사자들은 아직도 이러한 범죄 행위로 심판대에 서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하는 전쟁의 위험과 국제 위기를 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심각하고 역사적인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반인류 범죄, 전쟁 범죄, 대량 학살 범죄, 침략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사에게 고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추가적인 범죄와 궁극적인 인류의 재앙인 세계 대전을 예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범죄로 고통을 받거나 이러한 범죄를 중단시키려는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 각국 정부, 단체 또는 기구에서는 이 고발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

이 고소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들은 다음 2 가지 주요 범죄 유형과 관련됩니다.

- 대량 학살 및 기타 반인류 범죄를 포함한 '질병과 병존하는' 제약 비즈니스에 의해 자행된 범죄
- 2003 년의 이라크 침략 전쟁 및 침략 전쟁 범죄와 기타 반인류 범죄를 포함한 세계 대전의 조장과 관련된 범죄

이러한 2 가지 유형의 범죄는 모두 동일한 투자 그룹과 그 정치적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직결되거나 관련됩니다. 피고인들은 전인류에 반하여 자행된 가장 중대한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국제 기소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 질병과 병존하는 제약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자행된 범죄

1.1. 대량 학살 범죄

피고인들은 ICC 규정 제 6 조에 의해 기소되는 대량 학살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포함되지만 그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1.1. 살인에 의한 대량 학살 (6a 조)

1.1.2.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해 행위에 의한 대량 학살 (6b 조)

1.2.3. 신체적 손상을 야기할 것으로 추정된 의도적인 생명의

가해 행위에 의한 대량 학살 (6c 조)

1.2. 반인류 범죄

피고인들은 ICC 규정 제 7 조에 의해 기소되는 대량 학살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포함되지만 그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 | |
|---------------------------|--------|
| 1.2.1. 살인 반인류 범죄 | (7a 조) |
| 1.2.2. 집단 학살 반인류 범죄 | (7b 조) |
| 1.2.3. 노예적 흑사 반인류 범죄 | (7c 조) |
| 1.2.4.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반인류 범죄 | (7e 조) |
| 1.2.5. 기타 비인도적 행위의 반인류 범죄 | (7k 조) |

'질병과 병존하는' 제약 비즈니스와 연관된 범죄를 통한 혐의 입증 요약(혐의 1.1. - 1.2.)

1. 피고인들은 자연 요법을 통하여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고혈압, 심장 마비, 당뇨 합병증 및 기타 질병을 포함한 심장 혈관 질환, 암, 에이즈를 포함한 전염병, 골다공증 및 기타 여러 현대 질병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조기 사망을 의도적으로 조장해 왔습니다.
2. 피고인들은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자연 요법에 관한 생명을 구하는 정보의 보급을 방해함으로써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심장 혈관 질환, 암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은 추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조기 사망을 의도적으로 조장해 왔습니다.
3. 피고인들은 단기적인 증상 완화 효과만 있고 장기적인 유해 부작용이 알려져 있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존 질병을 확산하고 새로운 질병을 발병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조기 사망을 의도적으로 조장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증거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이라크 침략 전쟁 및 현재의 국제 위기와 관련하여 자행된 구체적인 범죄

2.1. 대량 학살 범죄

피고인들은 ICC 규정 제 6 조에 의해 기소되는 대량 학살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량 학살이란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국가, 민족, 인종, 종교 그룹을 파괴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다음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포함되지만 그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1.1. 살인에 의한 대량 학살 (6a 조)

2.1.2.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해 행위에 의한 대량 학살 (6b 조)

2.1.3. 신체적 손상을 야기할 것으로 추정된 의도적인 생명의

가해 행위에 의한 대량 학살 (6c 조)

2.2. 반인류 범죄

로마 규정 제 7 조가 정하는 반인류 범죄란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광범위한 또는 계획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공격의 인식을 가지고 자행된 다음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포함되지만 그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2.1. 살인 반인류 범죄 (7a 조)

2.2.2. 집단 학살 반인류 범죄 (7b 조)

2.2.3. 노예적 혹사 반인류 범죄 (7c 조)

2.2.4. 강제 추방 또는 강제 이전 반인류 범죄 (7d 조)

2.2.5. 감금 또는 신체의 자유 박탈 반인류 범죄 (7e 조)

2.2.6. 기타 이와 유사한 비인도적 행위의 반인류 범죄 (7k 조)

의도적으로 심한 고통을 야기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가해 행위를 가하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중대한 가해 행위를 가하는 범죄

2.3. 전쟁 범죄

로마 규정 제 8 조가 정하는 전쟁 범죄란 1949 년 8 월 12 일 체결된 제네바 협정(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정,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정)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협정에 따른 전쟁 범죄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되며 또한 그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3.1. 고의적인 살인의 전쟁 범죄 (8 조 (2)(a)(i))

2.3.2. 고문의 전쟁 범죄 (8 조 (2)(a)(ii)-1)

2.3.3. 비인도적 행위의 전쟁 범죄 (8 조 (2)(a)(ii)-2)

2.3.4. 생체 실험을 포함한 전쟁 범죄 (8 조 (2)(a)(ii)-3)

2.3.5. 의도적으로 심한 고통을 야기한 전쟁 범죄 (8 조 (2)(a)(iii))

2.3.6. 재산 파괴 및 횡령의 전쟁 범죄 (8 조 (2)(a)(iv))

2.3.7. 공정한 재판 거부의 전쟁 범죄 (8 조 (2)(a)(vi))

2.3.8. 불법 추방 또는 이전의 전쟁 범죄 (8 조 (2)(a)(vii)-1)

2.3.9. 불법 감금의 전쟁 범죄 (8 조 (2)(a)(vii)-2)

2.3.10. 인질 행위의 전쟁 범죄 (8 조(2)(a)(viii))

2.3.11. 민간인 공격의 전쟁 범죄 (8 조 (2)(b)(i))

2.3.12. 민간인 물건 공격의 전쟁 범죄 (8 조 (2)(b)(ii))

2.3.13. 과도한 우발적 사망, 부상 또는 손상의 전쟁 범죄 (8 조 (2)(b)(iv))

2.3.14. 비무장 장소에 대한 공격의 전쟁 범죄 (8 조 (2)(b)(v))

2.3.15. 전투 이외의 이유로 사람을 죽이거나 가해한 전쟁 범죄	(8 조 (2)(b)(vi))
2.3.16. 신체 불구 가해 행위의 전쟁 범죄	(8 조 (2)(b)(x)-1)
2.3.17. 적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강탈한 전쟁 범죄	(8 조(2)(b)(xiii))
2.3.18. 적국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 전쟁 범죄	(8 조 (2)(b)(xiv))
2.3.19. 독약이나 유독성 무기를 사용한 전쟁 범죄	(8 조 (2)(b)(xvii))
2.3.20. 금지된 총탄을 사용한 전쟁 범죄	(8 조 (2)(b)(xix))
2.3.21.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전쟁 범죄	(8 조 (2)(b)(xxi))
2.3.22. 군사 행동의 일환으로 자행한 기아 행위의 전쟁 범죄	(8 조 (2)(b)(xxv))
2.3.23. 살인 행위의 전쟁 범죄	(8 조 (2)(c)(i)-1)
2.3.24. 잔혹 행위의 전쟁 범죄	(8 조 (2)(c)(i)-3)

이라크 침략 전쟁 및 현재의 국제 위기와 연관된 범죄를 통한 혐의 입증 요약(혐의 2.1.1 - 2.3.24)

1. 피고인들은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라크 침략 전쟁을 의도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2. 피고인들은 심리전과 실제 군사 행동을 포함한 국제 위기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였습니다. 이 위기 조장 전략의 목표는 광범위한 영향력의 보호 법률을 포함하여 전세계적 규모로 시민권의 박탈을 허용하는 국제 긴급 사태를 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의 무장 해제라는 가면을 쓴 이라크 침략 전쟁은 이 전략의 일환인 것입니다.
3. 이라크 침략 전쟁 중에 피고인들은 대량 학살, 살인, 신체 불구 가해 행위 및 기타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가해 행위를 의도적으로 자행했습니다.
4. 이 전쟁의 전시와 전후에도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공공 및 사유 재산을 파괴하거나 강탈하였습니다. 이라크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매장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사적인 이득을 노리는 피고인들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증거'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고소장에 대한 역사적 선례

제약/석유화학 카르텔인 이계 파르벤(IG-Farben)의 경영진을 심판한 뉘른베르크(Nuremberg) 전범 재판소

약 50 여년 전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 유럽 최대의 제약/석유화학 카르텔이었던 이계 파르벤(IG Farben Corporation) 경영진을 심판하기 위해 뉘른베르크(Nuremberg)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뉘른베르크(Nuremberg) 전범 재판소는 이들을 2 차 대전의 전범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 기소라는 선례를 남겼으며, 궁극적으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뉘른베르크(Nuremberg) 전범 재판소는 정치 군사적 지도자들을 물론 히틀러의 정권 장악을 도운 기업 경영진에게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4 명에 이르는 이계 파르벤(IG Farben)의 경영자와 간부가 이 전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국의 수석 검사인 Telford Taylor 는 모두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기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전쟁을 자행한 전범들을 고발합니다. 이들을 대량 학살, 노예 범죄, 약탈 및 살인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극악무도한 범죄 혐의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찌 일당이 아닌 이들 기업 경영자 피고인들이 주된 전범들입니다. 이들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고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들은 히틀러가 자행했던 것보다 더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1947 년 제기된 이계 파르벤(IG Farben) 경영진의 주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 1: 유례 없이 전세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생명이 고통을 받게 한, 침략 전쟁과 정복 행위를 계획하고 자행한 혐의
- 혐의 2: 점령 국가의 경제적 통제권을 영구히 움켜쥐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국가의 공공 및 사유 재산을 강탈하고 약취한 행위 및 기타 중대한 범죄 행위의 혐의
- 혐의 3: 수백만의 민간인을 노예로 취급하고 혹사시키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살인한 범죄 혐의

약 50 년이 지난 지금, 다음과 같이 이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들은 놀랍게도 그 당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 국제 테러와의 전쟁 및 대량살상무기의 무장 해제라는 가면으로 이라크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자행한 혐의. 결과적으로 이라크의 방대한 지역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함
- 국제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전세계의 경제적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및 사유 재산을 강탈하고 약취한 혐의. 이 침략 전쟁을 위하여 피고인들은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였습니다.
- 살인, 인체에 대한 중대한 가해, 살인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의 반인류 범죄와 신체적 가해 행위 등에 의한 대량 학살

자행된 범죄의 증거

이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의 증거는 다음 2 가지 주된 범죄 유형과도 연관됩니다.

- 질병과 병존하는 제약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자행된 대량 학살 및 기타 반인류 범죄의 증거
- 이라크 침략 전쟁 및 세계 대전의 조장을 통해 저지른 전쟁 범죄와 침략 행위 그리고 기타 반인류 범죄의 증거

1. 질병과 병존하는 제약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자행된 대량 학살 및 기타 반인류 범죄의 증거

한 가지 질병에 대해 등록된 약품을 다른 질병에도 최대한 사용하도록 확장하면서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질병을 지속시키고 확장한 혐의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계 규모로 봤을 때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천문학적인 전세계적 규모의 비즈니스 사기극을 계획하고 연출하고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1.1. 의도적인 질병의 확산

오늘날의 가장 흔한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여 수백 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병들이 피고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속되며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1.1. 관상동맥 심질환

관상동맥 심질환과 심장 마비의 주된 원인은 동맥 벽의 구조적 약화와 기능 손상에 있으며, 고혈병과 유사하게 이러한 현상은 비타민과 기타 필수 영양소의 장기 결핍 때문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장 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약 회사의 접근법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원인을 무시한 채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준을 줄이는 등의 증상을 줄이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상 시장인 질병의 치료가 의도적으로 무시되는 동안 이러한 제약 회사 의약품의 유해 부작용이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죽어간 심장 혈관 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매년 1,200 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1.2. 고혈압

고혈압의 주된 원인은 동맥 민무늬근세포의 필수 영양소 결핍에 따라 동맥 벽의 장력이 증가하여 동맥 직경이 좁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임상 연구서에서 특허가 인정되지 않은 미량 영양소 특히, 아미노산 아르기닌 및 마그네슘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수많은 혈관벽 세포의 결핍 현상을 해소하여 혈관벽을 완화함으로써 혈관 직경을 넓히고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 치료제로 판매되는 제약 회사의 약품은 증상의 완화에만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를 줄이고 이뇨제는 혈액량을 줄입니다. 이러한 제약 회사 의약품은 고혈압의 주된 원인인 혈관벽의 '경련'을 의도적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질병의 치료를 도외시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의약품은 무수한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여 그에 따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유해 부작용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고혈압 환자들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며,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1.3. 심장 마비

심장 마비의 주된 원인은 수많은 심근 세포에 있는 세포 생체 촉매, 특정 비타민, 무기질, 카르니틴, 조효소 Q10 및 기타 생체 에너지 전달체의 결핍입니다. 이로 인해 인체의 심장 펌프 기능이 저하되고 수분 축적이 감소됩니다.

그러나 심장 마비의 치료를 위한 제약 회사의 접근법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증상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심장 마비 치료제로 판매되는 이뇨제는 인체에 축적된 수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비타민, 무기질 및 기타 수용성 생체 에너지 전달체를 배출합니다. 따라서 심장 마비 치료제로 판매되는 제약 회사 의약품은 이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며, 이뇨제를 투여한 심장 질환자들의 예상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의도적으로 질병의 치료를 도외시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의약품은 인체의 필수 영양소를 배출함으로써 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악화시킵니다. 세계적으로 백만 명 이상의 심장 질환자들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다가 결국은 조기에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1.4.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의 주된 원인은 수많은 전기적인 심근 세포에 있는 미량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유비퀴논을 비롯한 기타 생체 에너지 전달체의 결핍입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심장 박동에 필요한 전기 충격이 불완전하게 생성되거나 전달됩니다. 이중 맹검법에 의해 위약(플라세보)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최근의 한 연구를 통해서 미량 영양소의 사용이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치료하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의 치료를 위한 제약 회사의 접근법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증상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부정맥 치료제는 대개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더욱 악화시키며 심정지를 유발하여 환자가 조기에 사망하도록 합니다.

10년 전에 '치명적인 의학(Deadly Medicine)'의 저자인 Thomas Moore 는 이 책에서 미국의 부정맥 치료제 신약 하나가 베트남 전쟁의 희생자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백만 명 이상의 심장 질환자들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1.5. 암

최근까지 암은 일종의 사형 선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연 요법과 세포 의학에 관한 최근의 발전은 이러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요법에 관한 의학 연구들이 효능이 없는 약품만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등한시되고 배제되며, 이러한 약품이 이들에게 최대 이윤을 가져다 주는 시장으로 암의 지속적인 만연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암의 만연과 관련하여 자행된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죄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암이 동일한 방식 즉, 교원질 소화 효소(콜라겐 분해 효소, 금속단백 분해 효소)를 이용하여 퍼진다는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미량 영양소와 함께) 자연 아미노산 리신 요법을 사용하면 이러한 효소를 억제하여 암 세포의 발달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피부암, 섬유모세포종, 활막암(synovial cancer)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암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종류의 암이 이 요법에 반응을 나타냅니다.

의학 분야의 이 비약적인 발전이 추가로 고찰되지 못하고 전세계 암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특허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러한 물질의 이윤 폭이 낮다는 것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궁극적으로 그 질병의 완전 퇴치와 수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제약 시장의 붕괴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판매되는 제약 회사의 의약품이 특히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것입니다. '화학 요법' 용어를 동원한 암 치료라는 미명하에 머스타드 독가스(이페리트)의 파생물과 같은 독성 물질이 환자에 투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이 인체에 있는 수백 만 개의 건강한 세포도 함께 파괴한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다음의 결론들이 고려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암은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지속되어 수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에 경제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둘째, 화학 요법이라는 미명으로 독성 물질을 교묘하게 이용하면 이러한 물질이 투여된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략의 결과로 감염, 염증, 출혈, 장기 부전 등 이러한 약품의 심각한 부작용을 치료하는 약품 시장이 본래 화학 약품 시장보다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의도적인 기만 전술을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도 활용했던 것입니다.

1.1.6. 에이즈와 기타 전염병

이와 유사한 기만 전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가운데 하나인 에이즈의 치료에 활용되었습니다. 이미 10 년 전에 이루어진 과학적 연구들에 의해 비타민 C가 HIV 바이러스의 복제를 99.9% 이상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10 년이 넘게 접해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안전하고 저렴하며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치료법을 도외시하고 무시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으며 터무니없이 과도한 특허 사용료 때문에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특허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렇듯 파렴치한 비즈니스 계획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전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일 요법이 비타민 B6, B12, 엽산 및 기타 특정 필수 영양소의 최적 공급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배척해 왔습니다. 세포 물질대사의 이러한

생체 촉매가 인체의 감염을 방어하는 주된 무기인 백혈구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제약 업계는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의 무수한 생명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의약품을 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자연적이고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대안에 관한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도외시하면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됨은 물론이고 이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도 함께 붕괴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이미 현재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는 갈등 구조에 의도적으로 처해진 것입니다.

1.1.7. 기타 질병

피고인들이 그들의 '질병과 병존하는' 범죄적인 비즈니스 대상 시장으로 이용하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악성 전염병을 비롯한 현대의 다른 수많은 공통 질병들이 사라지지 않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2. 피고인들의 범죄적 마케팅 계획에 대한 증거

1.2.1 제약 시장의 확장을 위한 고의적인 질병의 확산 및 새로운 질병의 유발

피고인들은 유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품군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기존 질병의 치료라는 미명으로 새로운 질병을 고의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품의 부작용에 의해 발생한 새로운 질병들은 오랜 기간이 흘러야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사실이 이러한 기만 술책의 추가적인 은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강하제. 특히 *스타틴*과 *파브린산*은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가명으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무수한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는 이러한 약품들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요법제*는 암 치료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약품은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는 최대 원인인 심각한 부작용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 요법과 관련된 범죄적 마케팅 계획은 피고인들이 암을 사형 선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동됩니다. 또한 화학 요법을 통한 불과 수개월 정도의 환자 생명 연장도 피고인들이 성공 사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심장 마비와 발작을 예방한다는 미명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지만 이 약품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교원질이 파괴되어 심장 마비와 발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위궤양이나 위장관 출혈과 같은 별개의 질병까지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염증제*는 관절염 등에서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품의 다수는 관절과 같은 결합 조직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약품을 장기간 사용하면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화시킵니다.

*칼슘 길항제*는 고혈압을 치료하고 심장 마비를 예방하는 약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지만 이러한 약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심장 마비와 심장 발작 및 기타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을 비롯한 기타 호르몬제는 골다공증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약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지만 이러한 약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투여한 여성의 30% 이상에 암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약품으로 인해 특히 자주 발병되는 암은 유방암이나 자궁암과 같은 호르몬 의존성 암입니다.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의약품 시장을 확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약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고의로 약물 중독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널리 유통되어 있는 *다이아제팜('Valium')*을 포함한 수많은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가 약물 의존과 약물 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성 약품의 전세계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전면 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직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약품. 제약 투자 비즈니스의 전제 조건이 특허성이기 때문에 제약 업체의 약품은 대개 합성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체에 해롭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약품에 대해 단기적인 증상 완화라는 동일한 사기 비즈니스 원칙이 적용되며 이와 동시에 손상이 야기되고 새로운 의약품 시장의 토대를 이루는 새로운 질병이 점차적으로 유발됩니다.

1.2. 의약품 시장을 새로운 질병으로 확장

이러한 범죄를 실행에 옮김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이전에는 다른 질병에 대해 권장하던 약품을 새로이 권장할 대상 질병을 만들어냄으로써 의도적으로 기존의 제약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다음 예들을 적시합니다.

두통약은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두통약 및 진통제로 개발되었는데, 지금은 장기간 사용하도록 피고인들에 의해 대량 유통되며 권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한 사람들도

심장병과 기타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한다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통하여 이러한 유통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관상동맥 심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계의 항생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심장 마비에 대한 이른바 '세균 요법'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전세계에 퍼뜨렸습니다. 클라미디아 또는 기타 세균이 실제로 죽상경화증이나 심장 마비를 유발한다는 어떠한 임상적 증거도 없이 피고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심장 마비를 예방한다는 미명으로 항생제의 일반적인 사용을 무자비하게 조장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약품의 사용을 다른 질병들로 확장한 실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 술책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저질러진 범죄의 모든 죄상은 추가 조사를 통하여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1.4. 범죄를 쉽게 자행할 목적으로 사회의 전반에 의도적으로 침투한 것과 관련된 범죄

피고인들은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기타 여러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의 의학 및 건강 부문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침투하여 금전적 및 기타 종속 대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의료 연구의 주된 목적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질병의 치료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최대 질병 시장을 발굴하여 제약 회사에 최대 이득을 안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의과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이고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자연 요법에 관한 지식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켜 왔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자연 요법에 관한 지식을 고의로 게을리하거나 전혀 가르치지 않은 상태로 의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과 대학의 치료법 교육은 새롭게 등장한 *약리학*이라는 분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배출된 의사들은 사실상 '질병과 병존하는' 제약 비즈니스의 훈련된 판매 자원으로 양성되어 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은폐하기

위해 특허 약품은 ‘과학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심지어는 ‘전문 의약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으며,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자연 요법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그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를 촉진하며 기타 여러 범죄를 자행하기 위하여 전세계 대중 매체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전적 및 기타 종속 대상을 만들고 기만적인 거짓 정보를 퍼뜨려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효능이 없고 안전하지 않으며 비싸기만 한 의약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입법 및 정치 시스템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법률과 규제안을 제정하여 통과시키고 기타 여러 수단을 강구해 온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건강 보험'과, 기타 공공 및 민간 건강 기금이라는 미명하에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도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들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맘껏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기만의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를 촉진하여 효능이 없고 유해한 치료법에 대한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전세계의 개인, 기업, 정부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어 왔습니다. 이것에 의해 피고인들은 제약 업계에게 터무니 없이 과도한 이득을 보장해 주고 전세계 수백 만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며 이들의 조기 사망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반인류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 유럽 의회와, UN 산하 기구,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여러 지역 및 국제 정치 단체 등의 기타 지역 및 국제 기구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하였습니다.

1.5.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효과적인 건강 정책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와 관련된 범죄

질병과 병존하는 투자 비즈니스를 보호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자연 요법에 대한 전세계 사람들의 접근을 전략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몇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자연 요법에 관련한 건강 정보 차단.* 피고인들은 인간이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비타민 C(아스코르브산)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건강 정보를 고의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은폐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비타민 C 결핍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심장 혈관 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체가 자연 아미노산 리신을 생성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건강 정보도 고의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은폐해 왔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모든 인간은 리신 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암이나 기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고의적으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류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2.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자연 요법에 대한 공공연한 의혹 제기.* 피고인들은 특허 약품을 통한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를 보호 및 확대하고 다른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건강 요법의 신뢰성을 깎아 내리는 악의적이고 조작된 정보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퍼뜨림으로써 일반 대중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고의적으로 수억 인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류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3.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자연 요법과 관련한 건강 정보의 보급을 불법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자연 요법에 관련한 예방 및 치료 정보의 유포 금지 법안을 국가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차원으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자연 요법이 자연적인 치료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자연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의 활용 방안에 대한 '상한'을 제멋대로 낮게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UN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이름을 빌어 UN의 전 회원국까지 상대로 하여 이러한 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1.5.5. '질병과 병존하는' 제약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온건한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른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 법률의 즉각적이고 전역적인 제정을 정당화하고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 지속과 함께 자신들이 기소된 다른 범죄 행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심리적이고 법적인 전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 등을 통해 고의로 국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 이라크 침략 전쟁과 관련하여 자행된 대량 학살, 전쟁 범죄 및 기타 반인류 범죄의 증거

피고인들은 대량 파괴 무기를 동원한 침략 전쟁 등을 통해 고의로 국제 위기를 고조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했던 국제 위기 시나리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9.11 테러의 비극을 지속적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극의 심리적인 요인을 최대화하는 반면 9.11 테러의 실제 사건과 그 배경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9.11 테러의 조사를 위한 독립 기구의 창설을 방해한 것은 바로 백악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비극에 대한 진실이 일반 국민에게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9.11 테러는 국제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줄곧 남용되어 왔습니다.

9.11 참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이 비극을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위한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인 정복 이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천연 자원을 강탈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은 다음 국가인 이라크를 침공하는 데 이 구실을 사용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은 세계 공동체를 이라크 침략 전쟁에 동참하도록 위협했습니다.

UN 안보리의 대다수 국가를 비롯한 세계 여론이 이 전쟁에 대한 반대 의사를 압도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피고인들에 의해 계획되고 저질러진 이 전쟁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침략 전쟁이자 반인류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다면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인류를 파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법률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할 것입니다.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이 동원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찰한다는 핑계거리를 꾸며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모든 국가는 이 이야기가 날조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통틀어 수만 명의 이라크 국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지지가 없는 전쟁 중에 발생한 대규모의 살육은 대량 학살 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라크의 유정과 기타 천연 자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유정에 대한 압류가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라는 거짓말을 유포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점령과 그 천연 자원에 대한 불법 점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라크의 재산을 강탈하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심지어 이러한 위기를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소위 '테러 방지' 법을 통해 계획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범죄를 지속하기 위해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또는 '애국법(Patriot-Act)' 등의 기만적인 이름으로 포장되어 시민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인 지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이러한 위기 의식을 조성하는 동시에, 그들은 매체를 동원하여 제약 카르텔을 위한 보호 법률 제정에 대한 움직임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의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국토안보법에는 제조물 책임법 소송으로부터 제약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지 피고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 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전쟁 범죄를 통해 '질병을 통한 비즈니스'를 전세계적으로 견고하게 하고, 더 큰 범죄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러한 전쟁 범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UN 산하 기구, UN 무기 사찰단을 통한 모든 정보 및 이라크측의 전쟁 범죄 보고서, 국제적인 정보 소스를 비롯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기타 정보 소스가 포함됩니다.

전세계 인류는 이 사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전쟁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피고인 명단

다음은 여러 나라의 기업, 군 및 정계 인사가 포함된 피고인들의 명단입니다.

1. **조지 워커 부시(George Walker Bush)**. 미국 대통령인 조지 부시는 제약/석유화학 카르텔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된 정치 집행자입니다. 그는 또한 이라크 침략 전쟁 및 이 고소장이 적시한 기타 범죄의 주된 정치 집행자입니다.
2. **토니 블레어(Anthony Charles Lynton Blair)**. 영국 총리인 토니 블레어는 조지 부시와 함께 이 고소장에 열거된 범죄를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담한 정계의 수장이자 집행자입니다.
3. **딕 체니(Richard Bruce Cheney)**, 미국 부통령. 체니는 텍사스주 달라스의 석유 시추 회사인 Haliburton 사의 최고경영자였습니다. 이라크 침공 이후, Haliburton 사는 국가 재건이라는 미명아래 수행된 이라크에 대한 경제적 약탈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4.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오늘날 Pharmacia 사에 합병된 G. D. Searle 사의 제약 관련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몇몇 생물공학 회사 및 제약 회사의 최고 경영직을 역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질병과 병존하는' 제약 비즈니스의 전략적 조직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제약 업계로부터 몇 차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럼스펠드는 조지 부시를 보좌하면서 이라크 침략 전쟁을 부채질한 주요 인물 중 하나입니다.
5. **존 애쉬크로프트(John Ashcroft)**, 미국 법무장관. 존 애쉬크로프트는 소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의 발의자 중 하나이며 미시민권 축소를 계획적으로 공모한 조직책 중 하나입니다. 그는 미국 내 제약 업계의 범죄에 대해 필연적으로 면책 특권을 부여하게 될 보호 법률 제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 **톰 리치(Tom Rich)**. 미국 국토안보국장인 톰 리치는 존 애쉬크로프트와 함께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 지속과 미시민권 축소 통한 기타 범죄 지속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관리를 강화한 인물입니다.
7.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는 석유화학 관련 회사인 Chevron 사의 전임 이사였으며 피고인들의 침략 전쟁을 선동한 인물입니다.

다음은 제약 관련 부문에서 기소된 회사의 명단입니다.

1. **Pfizer Inc.**, 최고경영자 Henry A. McKinnell 박사, 기타 경영진 및 이사진
2. **Merck & Co., Inc.**, 최고경영자 Raymond V. Gilmartin, 기타 경영진 및 이사진
3. **GlaxoSmithKline PLC**, 최고경영자 Jean-Pierre Garnier 박사, 기타 경영진 및 이사진
4. **Novartis AG**, 최고경영자 Daniel Vasella 박사, 기타 경영진 및 이사진
5. **Amgen Inc.**, 최고경영자 Kevin Sharer, 기타 경영진 및 이사진
6. **Astra Zeneca**, 최고경영자 Tom McKillop 경, 기타 경영진 및 이사진
7. **Ely Lilly and Company**, 최고경영자 Sidney Taurel, 기타 경영진 및 이사진
8. **Abbott Laboratories**, 최고경영자 Miles D. White, 기타 경영진 및 이사진
9. 해당 경영진 또는 이사진이 '질병과 병존하는 비즈니스' 및 기타 범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촉진하는 데 관여한 기타 제약 회사

다음은 석유화학 관련 부문에서 기소된 회사 및 해당 경영자 명단입니다.

1. **ExxonMobil Corporation**, 최고경영자 Lee R. Raymond, 기타 경영진 및 이사진
2. **British Petroleum(BP)**, 최고경영자 Browne of Madingley, FREng, 기타 경영진 및 이사진
3. **Chevron Texaco Corp.**, 최고경영자 David O'Reilly, 기타 경영진 및 이사진
4. 이라크 침략 전쟁을 통한 약탈 및 강탈로부터 이득을 챙긴 기타 석유화학 회사

다음은 기소된 다국적 기업과 해당 기업 및 범죄에 연루된 대상자 명단입니다.

1. 기소된 범죄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록펠러(Rockefeller) 금융 그룹** 및 Rockefeller 가의 구성원
2. 기소된 범죄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로스차일드(Rothschild) 그룹** 및 이 그룹의 모든 구성원
3. 기소된 범죄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JP Morgan 그룹** 및 이 그룹의 모든 구성원
4. 미국, 유럽 및 일본의 세 개 지역에서 해당 투자 그룹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David Rockefeller** 에 의해 창립된 **삼축위원회** 및 해당 회원국을 비롯하여 기소된 범죄 행위에 개인적으로 가담했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득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
5. 추가 조사 과정을 통해 기소된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입증되는 **기업의 로비 그룹 및 이익 단체**
6. **J.P. Morgan Chase 은행**, 최고경영자 **William B. Harrison Jr.**, 기타 경영진 및 이사진
7. 추가 조사 과정을 통해 기소된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입증되는 **기타 금융 기관**, 그 기관의 경영진, 이사진, 주주 등
8. 추가 조사 과정을 통해 기소된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입증되는 **국내 또는 국제 정치 단체 및 정치인**
9. 추가 조사 과정을 통해 기소된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입증되는 **군대의 구성원**
10. 추가 조사 과정을 통해 기소된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입증되는 **제약 및 건강 단체장**
11. 추가 조사 과정을 통해 기소된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입증되는 **신문, 방송사의 구성원**
12. 추가 조사 과정을 통해 기소된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개인, 조직 또는 단체**

이 고소 건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 협약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로마 규정(Rome Statutes)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국제 협약 및 선언이 이 고소 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UN 헌장

2.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8일)

3. 인권에 관한 제네바 협정(1949년 8월 12일)

4. 대량 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51년 1월 12일)

5.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1968년)

6.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범한 범법자에 대한 감시, 체포, 인도 및 처벌에 관련한 국제적 협력 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Detection, Arrest, Extradition and Punishment of Persons Guilty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1973년)

피고인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둘러싼 주변 상황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고의로 위에서 적시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범죄는 전 인류에 대해 자행된 반인류 범죄입니다.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러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제법에 의해 운영되는 형사재판소입니다.

또한 ICC는 2차 대전이라는 참상을 겪고 뉘른베르크(Nuremberg) 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세계대전과 같은 비극이 또 다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 공직자에 대한 기소 책임

피고인들은 ICC의 결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 없이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이 규정에서는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개인을 이 규정에 따른 형사 책임으로부터 면제해 주지 않으며 또한 그 자체로서 감형 사유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정 제 27 조 1 항).

또한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서 규정한 개인의 공적 지위에 따르는 면제나 특별한 절차 규칙은 해당 개인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규정 제 27 조 2 항).

2. 형사 책임의 배제

여기에 기소된 어느 누구도 이 규정 제 31 조의 내용을 근거로 형사 책임의 배제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반대 주장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일시적인 '제휴' 여론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소급하여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무효입니다.

3. 미국 정부 및 미국 시민에 대한 처벌 권한

피고인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경우 미국이 로마 규정에 서명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피고인이 ICC의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규정에는 이미 90 개국(즉, UN 회원국의 거의 1/2)이 서명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ICC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계획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ICC의 관할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ICC가 규정하는 관할 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로마 규정의 조항에 따라 ICC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특정 회원국의 구성원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CC는 국가가 아닌 자연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개인적인 책임을 물어 처벌을 행사합니다(규정 제 25 조 1 항 및 2 항).

ICC 규정은 미국 행정부가 약소국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체결하려는 쌍방 간의 '면책특권협정'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UN 안보리는 ICC의 대미 정부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즉, 피고인의 대다수가 포함된)가 결정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뉘른베르크(Nuremberg) 전범 재판소에 기소된 주범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전범재판소에 출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ICC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호소

앞에서 거명된 범죄자들은 반드시 이 고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ICC 에 기소되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의 개별적 책임에 대한 조사는 ICC 소속 검사에 의해 착수되고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국민이 함께 동참하여 이 조사를 계속하고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 평화에 대한 인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죄
- 생명에 대한 인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죄
- 건강에 대한 인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죄

이 고소장은 피고인들에 대한 법적 소송이 개시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갱신 및 보완될 것입니다.

이 고소장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행해진 범죄 중 가장 큰 범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ICC 의 기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세계의 수백 만 인류가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또 다른 세계 대전의 위험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 하루도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뉘른베르크(Nuremberg) 전범 재판소의 미국 검사는 화학/석유화학 카르텔인 이계 파르벤(IG Farben) 경영자에 대한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의 범죄를 낱알이 밝혀내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정부와 모든 국민들은 하나로 단결하여 이들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이 행동을 취할 때입니다.

2003 년 6 월 14 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세계 인류의 이름으로

의학 박사 Matthias Rath

의학 박사 Matthias Rath

Dr. Rath Health Foundation(건강 재단)

Muzenstraat 89

2511 WB Den Haag

The Netherlands